

■ 서류접수 기간 : 2021. 04. 01(목) ~ 2021. 04. 10(토) 10:00 ~ 17:00 까지, 10일간

■ 서류접수 장소 : 당사 견본주택(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 가점제	0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0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)
	0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	0		주민등록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0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0	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0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)
	0		주민등록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-비속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/ 직계존-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0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 직계비속	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0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0		출입국 사실증명원	직계존-비속	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-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※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※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※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0		계약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본인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- 인감증명서 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
	0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※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. - 대리인 :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0		위임장	-	-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계약체결 장소 비치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0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0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 되도록 "전체 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-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※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[서명]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,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[서명]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(대리접수 불가)